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안  
-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

인 천 광 역 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안 -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

의안 번호	000
----------	-----

제출연월일 : 2010.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제안사유

- 관내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 및 검단 일반산업단지(3단계) 예정부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에 따라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의견청취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 변경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 4개 신설(99,111㎡), 1개 변경(64,569㎡(감 3,531㎡))
  - 도 로 : 중로 1개 노선 신설, 대로 1개 노선 변경
  - 녹 지 : 완충녹지 신설(10,141㎡)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변경 없음)
- 사 업 비 : 38,637백만 원(자체조달)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사업시행자 : (주)장형기업, (주)순환골재협회, 세원산업개발, 엔에코

### 3. 추진경위

- 2009.12.23 :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계획(Recycling-town) 市 방침
- 2010. 3. 4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 입안 제안
- 2010. 3.18 ~ 2010. 3.31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2010. 4. 5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 결정(변경) 입안(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공고 ('10. 4. 5 ~ '10. 4. 18)
- 2010. 4.27 :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인천시→한강유역환경청)
- 2010. 5.24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인천소방안전본부)
- 2010. 5.2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한강유역환경청)

### 4. 참고사항

#### ○ 주변여건 검토

- 사업부지는 인천광역시 서북부에 위치하여 북측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1단계)부지와 연결해 있고, 사업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 예정부지임
- 검단일반산업단지(1단계)내 폐수종말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 수도권 매립지 제2, 3, 4매립장 및 기 결정된 (주)인광환경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결하고 있으며, 유사·동종업종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부지로서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입지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부지로의 진출입은 사업지 전면 7~12m 현황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여 대로3-114호선이 조기 도로개설이 필요함

## ○ 토지 이용현황

- 사업부지내 미등록지인 수도권매립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71.3%)와 환경부(28.7%)에 매립면허권이 있음
- 일부 편입된 지역은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매립이 완료된 지역임

## ○ 토지소유현황

- 본 사업대상지의 사유지 10필지는 현재 토지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

구 분	계	사유지	미등록지	비 고
면 적(m <sup>2</sup> )	120,149	103,112	17,037	사용동의
구성비 (%)	100.00	85.82	14.18	
필지수(필지)	11	10	1	
구성비 (%)	100.00	90.91	9.0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용도지역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동의여부
				공부상	편입			
합 계				105,535	120,149			
1	오류동	1468	답	23,024	23,024	농림지역	김 상 문	동의
2	오류동	1524	임	46,116	45,572	자연녹지지역	(주)썬플라워리조트	동의
3	오류동	1525	임	1,618	1,618	자연녹지지역	(주)인광환경	동의
4	오류동	1525-2	임	1,633	1,633	자연녹지지역	(주)인광환경	동의
5	오류동	1528	임	4,661	4,661	자연녹지지역	(주)썬플라워리조트	동의
6	오류동	1529	임	14,380	14,380	자연녹지지역	(주)썬플라워리조트	동의
7	오류동	1530	임	3,514	1,635	자연녹지지역	김 상 문	동의
8	오류동	1530-1	임	8,649	8,649	자연녹지지역	김 상 문	동의
9	오류동	1531	임	793	793	자연녹지지역	김 상 문	동의
10	오류동	1534-1	답	1,147	1,147	자연녹지지역	김 상 문	동의
11	미등록지	-	-	-	17,037	계획관리지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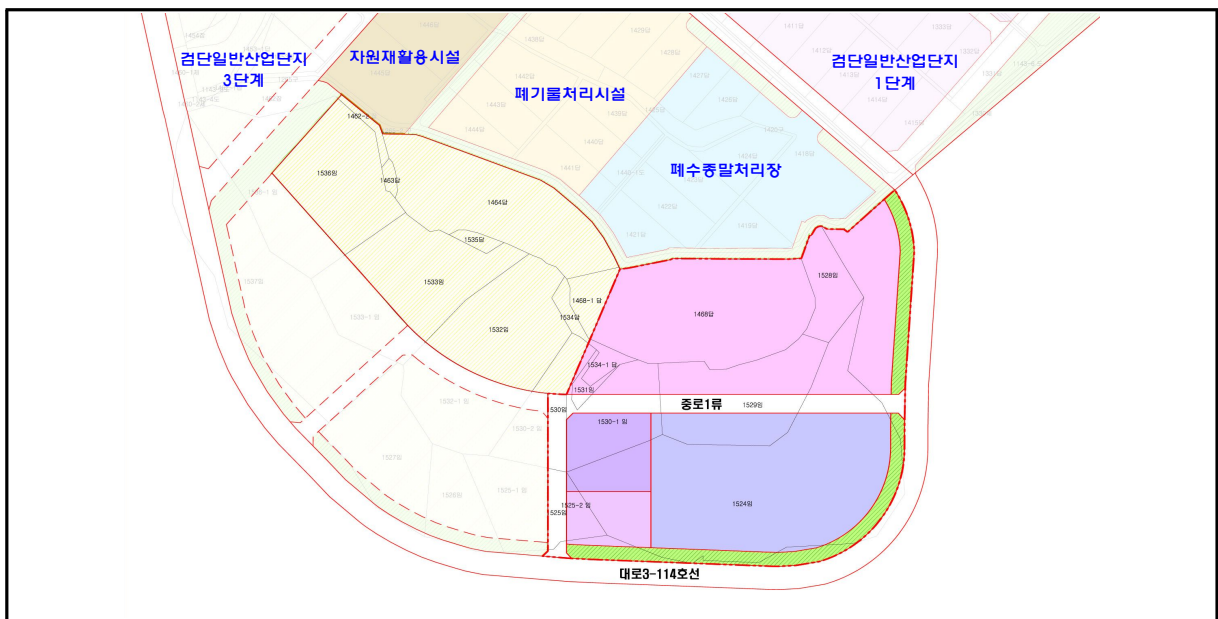
## ○ 법규 · 규정 검토

구분	법규	검토내용	비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1만㎡이상의 행정계획은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임	적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부지면적 5,000㎡이상의 도시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임	적합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제3절 1-3-4	○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토지적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적합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의회의견 청취 대상임	적합

## ○ 개발계획 검토

- 사업부지와 연접하는 (주)인광환경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재활용업체 등의 집단화계획의 필요성과 시설결정 정형화 등 시의회<sup>1)</sup>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sup>2)</sup>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함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구상도】



1)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09. 5.18)

2)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2009. 6. 3)

- 변경내용

구분	내용	비고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4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형기업 : 50,675㎡</li> <li>• (주)순환골재협회 : 35,494㎡</li> <li>• 세원산업개발 : 7,627㎡</li> <li>• 엔에코 : 5,315㎡</li> </ul>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1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광환경 : 64,569㎡(감 3,531㎡) (당초 68,100㎡ ⇒ 변경 64,569㎡)</li> </ul>
도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중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로 1개 노선 신설 - B=20m, L=539m</li> </ul>
	선형변경에 따른 대로 연장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로 1개 노선 변경 - B=25m, L=2,750m 감) 12m</li> </ul>
녹지	대로 3-114호선 변에 완충녹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10,141㎡</li> </ul>

## 5. 의견청취

○ 열람공고 : 2010. 4. 5 ~ 2010. 4. 18(14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468번지 일원	-	증) 50,675	50,675	-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	증) 35,494	35,494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	증) 7,627	7,627	-	자연녹지지역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530-1번지 일원	-	증) 5,315	5,315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변경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530번지 일원	68,100	감) 3,531	64,569	인천시 고시 제2009-236호 (2009.07.27)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입안내용	입안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면적 : 50,675㎡)	○ 도시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 집단화계획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하고자 함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면적 : 35,494㎡)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면적 : 7,627㎡)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면적 : 5,315㎡)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면적 : 64,569㎡)	○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중로 신설에 따른 부지 축소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	20	집산 도로	539	오류동 1525번지	대로 3-114호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3	114	25	보조 간선 도로	2,762	지구계 (오류동 1434번지)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 제928호 2007.07.30	-
변경	대로	3	114	25	보조 간선 도로	2,750	지구계 (오류동 1434번지)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 도로	-	-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감) 12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도로신설 B=20m, L=539m	○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대로 3-114	대로 3-114	·B=25m, L=2,750m 감) 12m	○ 설계기준에 부합한 평면곡선반경(R=140) 확보를 위한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 ○ 도시계획시설 : 녹지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완충녹지	대로 3-114호선 변	-	증) 3,256	3,256	-	계획관리지역
신설	녹지	완충녹지	대로 3-114호선 변	-	증) 6,885	6,885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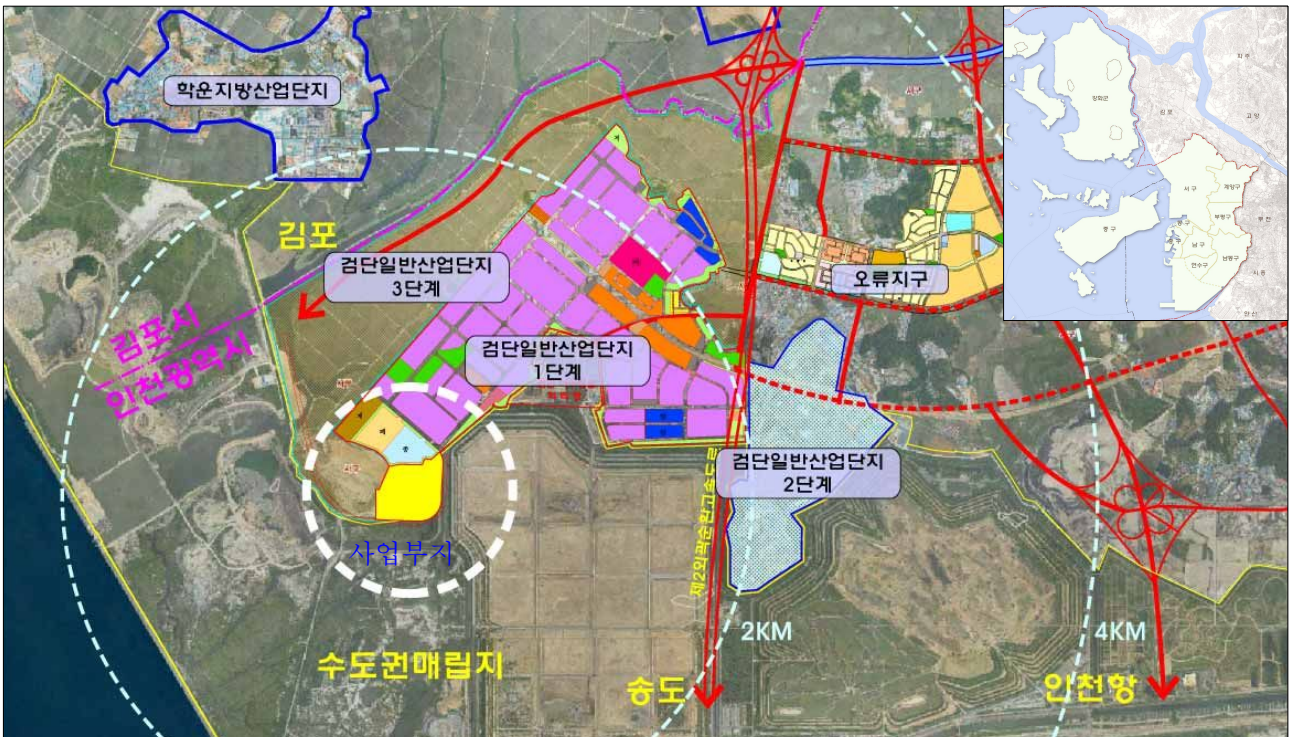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녹지	○ 완충녹지 신설 (면적 : 3,256m <sup>2</sup> )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에 따른 대로 3-114호선 변에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결정하고자 함
녹지	○ 완충녹지 신설 (면적 : 6,885m <sup>2</sup> )	

- ※ 붙임 : 1. 위치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1부.  
 3.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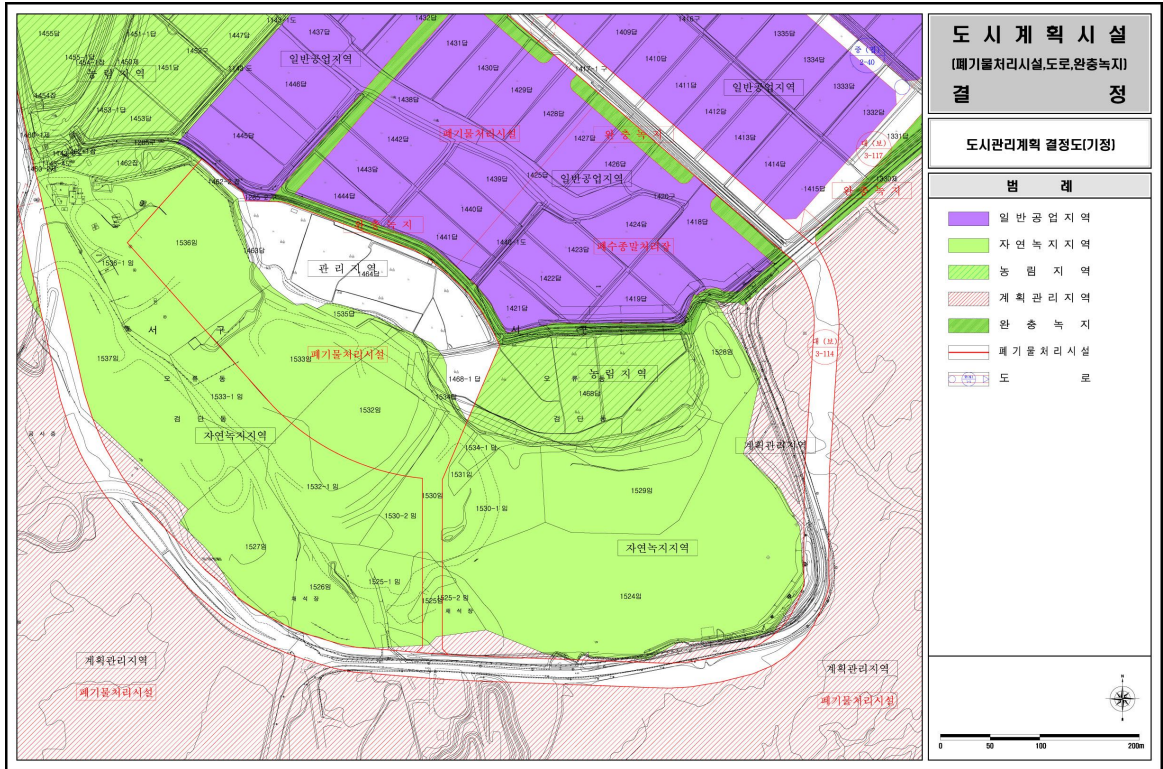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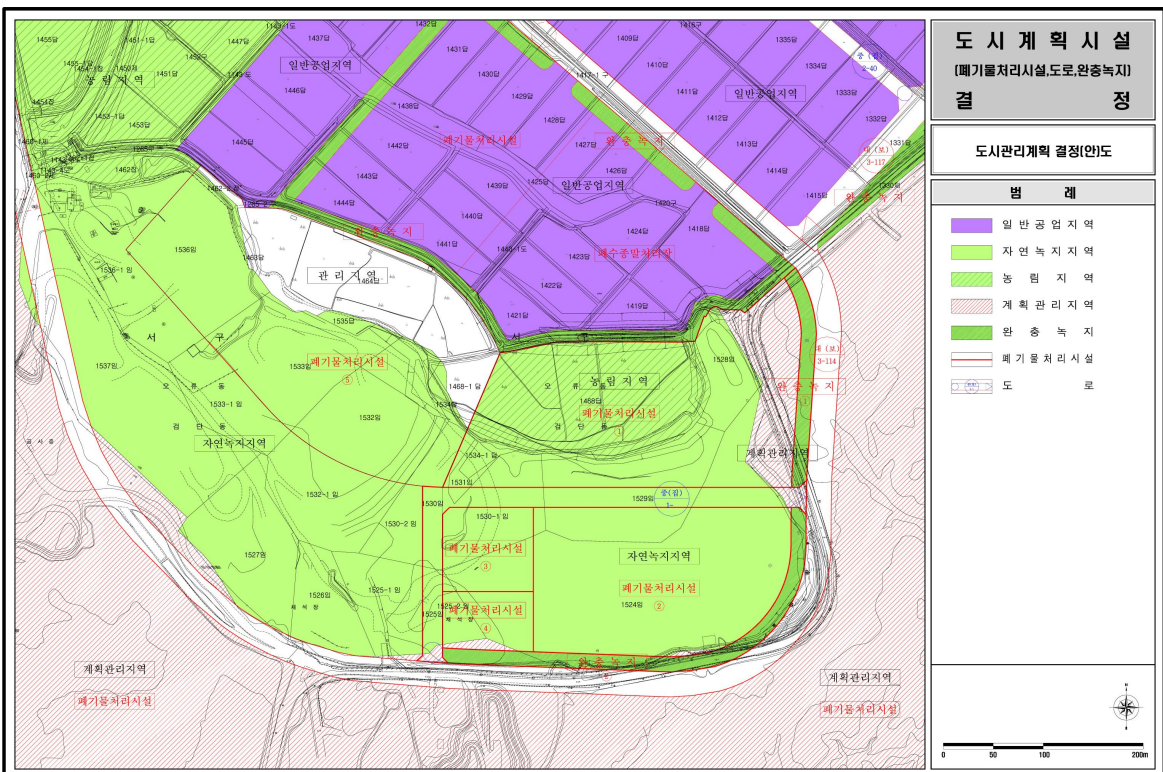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 기정



## ○ 변경



## ■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교통 기획과	○ 의견 없음		
도로과	○ 서구 오류동 146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결정 입안 제안건의 협의에 대하여는 해당 위치의 도로(대3-114호선) 개설시기는 우리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2단계(2013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진입로 계획에 참고  ○ 도로선형 변경사항은 경미한 곡선부 변경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기존도로(현황도로) 처리 관련사항과 수도권매립지(매립지 경계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관련 사항 확인	○ 진입도로(대3-114호선)에 대한 개설시기를 기존 현황도로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전 일부 구간에 대하여 개설하겠음  ○ 수도권매립지에 편입된 기존도로(현황도로) 및 부지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농식품 유통과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관련자료 제출하여 협의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 완료하였음	반영
환경 정책과	○ 의견 없음	-	-
자원 순환과	○ 공정시설, 주기시설, 보관시설은 옥내화(밀폐)가 반드시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인근 지역간 차폐를 고려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계 전 구간에 완충녹지 추가 반영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중간처리시설, 제조시설, 야적장 등) 시설계획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처리시설 허가(승인) 기관과 협의 추진	○ 공정시설, 주기시설, 보관시설은 옥내화(밀폐-돛 형태) 하겠으며, 옥내화 방법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인가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 검단일반산업단지 경계부는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으며, 계획대상지 동측·남측은 폭 15m의 완충녹지를 설치 계획하였음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계획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시 허가(승인) 기관과 협의하겠음	반영

협의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공원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의 제안 사유,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 재협의</li> <li>○ 새로이 설치될 녹지의 시설(녹지의 세분, 시설 배치·형상, 수목의 종류, 수량 등 포함), 토지 귀속 등에 관해 관할 구역 내 녹지 관리청인 서구청 녹지경관과 의견을 사전에 들어 반영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녹지 설치기준인 최소 10m 이상에 부합되도록 대3-114호선 변에 15m 폭으로 계획한 것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하겠음</li> <li>○ 녹지의 시설, 배치, 형상, 수목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 관리청인 서구청 녹지경관과와 협의하겠음</li> </ul>	반영
항만공항 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지역은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 15조(매립목적 또는 매립에 관한 공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및 매립목적변경인가(1989.6.14/농경지 → 수도권발생 쓰레기매립장)조건에 “매립 후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인천시 도시계획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관되어 있는 바,</li> <li>○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된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절차를 받아야 함</li> <li>○ 또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관련규정에 의거 매립목적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수면매립법」 관련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전에 협의 조치하겠음</li> </ul>	반영
개발계획과 (개발계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단 I(공사 중)·Ⅲ단계 산업단지와의 고저 차 발생에 따른 계획고 결정시 상호 연계 검토</li> <li>○ 검단Ⅲ단계 산업단지조성사업 지연 대비 연결도로는 자체 확보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대상지의 부지계획고는 현재 표고 및 인근 검단산업단지와의 사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GL 9.0m 으로 개략 계획하였음</li> <li>○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사업의 지연을 대비하여 연결도로는 자체 확보하여 사용하겠음</li> </ul>	반영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	-

협의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p>서구청 (도시개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시설 내부도로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중로1류)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것</li> <li>○ 도로 설치 시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li> <li>○ 사업시행자가 녹지조성 후 서구청에 관리이관(기부채납) 할 것</li> <li>○ 완충녹지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li> <li>○ 실시설계 진행시 서구청과 사전협의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도로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중로1류)는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토록 하겠음</li> <li>○ 도로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음</li> <li>○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하겠음</li>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녹지 설치기준인 최소 10m 이상에 부합되도록 대3-114호선 변에 15m 폭으로 계획하였음</li> <li>○ 실시설계 진행시 서구청과 사전협의 하겠음</li> </ul>	<p>반영</p>
<p>인천 도시개발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도시계획결정도에 기 승인 고시된 검단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도와 상이한 도면이 명시되어 수정 필요</li> <li>○ 기 결정된 검단일반산업단지내 도로와 연결도로인 도시계획시설 대3-114호의 접속위치 적정성 등 재검토 필요</li> <li>○ 해당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공급과잉에 대한 검토 필요(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부지(39,865㎡)가 계획되어있으며 바로 연접해서 (주)장형기업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추진 중인 사항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도시계획결정도에 최근 결정 고시된 검단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음</li> <li>○ 대3-114호의 접속위치는 기 승인 고시된 검단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 계획결정도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음</li> <li>○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서구에 산재 되어 있는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계획임</li> </ul>	<p>반영</p>
<p>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p>-</p>	

협의를부서	협의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형기업 등 4개사가 수도권매립지 경계 인접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 계획(폐기물처리시설 등)은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 부지 및 제3매립장 예정부지 중 17,474㎡를 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있어, 제2매립장 및 향후 제 3매립장 운영관리를 발생하는 환경적 요소(악취, 분진 등)가 주변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줌으로써 다수민원 발생으로 이어져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관리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고,</li> <li>○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권 내에 신규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되는 현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수도권매립지로서의 기능유지와 장기적인 매립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매립지 인접개발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개발 사업에 수도권매립지 부지의 사업구역 편입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공업용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함</li> <li>○ 2010. 4. 5 수도권매립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제척하여 결정 고시함</li> <li>○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 승인(경기도치수 30062-714, 89.6.14) 時 부관된 조건에 의하여 매립후 토지이용계획은 인천시 도시계획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므로 도시계획 시설 절차이행 가능</li> </ul>	미반영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일부 편입된 매립지는 현재 기고시&lt;2010-35('10.2.8)&gt;된 도로노선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10.2.18)하여 협의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검토 및 확인 필요</li> <li>○ 중간처리시설 입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마운딩)축조 후, 완충녹지(수림대) 폭을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설치 필요</li> <li>○ 환경오염(분지, 침출수 등)을 저감할 수 있는 돛형 등 밀폐식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저감대책 강구</li> <li>○ 당 부지(중간처리시설)와 경계지역인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적 환경관광명소화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친환경적으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고시된 도로노선을 반영하였으며, 노선검토결과 일부 곡선구간이 설계기준에 부합하여 평면곡선 회전반경(R=140)확보를 위한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가 불가피함</li>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녹지 10m이상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대3-114호선 변에 15m 폭으로 계획함</li> <li>○ 공정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화를 통하여 소음, 분진 등 환경 악영향 유발인자로 인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li> </ul>	반영

협의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재난 관리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대상지역을 사업지구만으로 국한한 것은 31쪽 “배수 유역도 및 우수 흐름도”상 타당치 못하니 우수흐름을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홍수·토사유출량 산정에 있어서도 지나친 생략으로 보고서 검토가 불가하니 보완 요함</li> <li>○ 확률강우강도식의 산정 유도 부분(44쪽-47쪽) : 강우강도식의 유도화 과정인 지속시간별 강우강도식(장·단기) 산정 및 채택, IDF곡선 도시 등 생략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용 검토 가능</li> <li>○ 토사유출량 산정에 있어 개발 전·후 50년빈도 추가할 것</li> <li>○ 주변지역이 쓰레기 매립지로 침하 및 gas 발생 등이 예상되니 이와 연관된 당 사업부지의 정확한 지질을 파악하기 위해 “토양분포 현황 및 지질현황”을 추가할 것</li> <li>○ 사업현장은 성토를 하여 부지 조성을 하는바 성토고로 인한 주변지역의 홍수시 우수처리시설과 지반조사 및 토양검사를 수행하여 연약지반처리 및 토양오염수준을 검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는 외부유역이 없으므로 검토대상지역을 사업지구로만 설정하였으며, 차후 실시계획시 우수계획에 따라 검토대상지역을 재설정하여 재해 영향을 검토하겠음</li> <li>○ 홍수유출량 산정부분에서는 유입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조정, 강우강도 유도시 인천관측소(1961~2009)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정하였으며, 토사 유출량은 원단위법으로 재산정하였음</li> <li>○ 또한, 현 단계에서는 검토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차후 실시계획 수립시 토질시험결과와 좀 더 세부적인 공사 계획, 우수계획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겠음</li> <li>○ 강우강도는 인천관측소(1961~2009)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장·단기로 구분하여 유도하였으며, IDF곡선도 작성하여 보완하였음</li> <li>○ 토사유출량은 원단위법으로 재산정하였으며, 차후 실시설계 사전재해에서 RUSLE 방법으로 검토시에 30년, 50년빈도로 산정하겠음</li> <li>○ 사업부지의 정확한 지질을 파악하기 위해 “지형 및 지질조사”를 추가하였음</li> <li>○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록에 수록하였음</li> <li>○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수관(D1,200@1)을 설치하여 외곽배수로로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음</li> <li>○ 지반조사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수행하여 연약지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토양오염도 검사는 수행하여 결과를 부록에 첨부하였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협의를부서	협의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재난 관리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토부지 조성시 토사의 유출로 주변 환경의 오염을 차단하여야 함</li> <li>○ 성토 및 절토사면이 발생되면 사면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li>○ 본 사업부지내에 보관되는 폐기물로 인한 유해먼지 및 하천수와 지하수오염발생 여부 검토와 발생시 이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li> <li>○ 호우시 우수처리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세부 개발 계획 수립시 우수처리대책 및 침사지 설치가 요망됨</li> <li>○ 인접하여 시공중인 검단일반산업단지와의 영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함</li> <li>○ 개발중에는 계획지구 전체가 나대지화 되고 개발후에는 일부계획시설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와 잘다져진 나대지로 인한 유출계수의 증가로 홍수유출량이 증가할것으로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중 홍수 및 토사유출량 증가에 따른 저감시설로 임시침사지를 계획 하였으나, 향후 개발사업 단계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하겠음</li> <li>○ 향후 실시계획시 성토 및 절토사면이 발생되면 사면 안정성검토를 통하여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li> <li>○ 폐기물 보관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는 미세먼지(PM-10)가 주로 발생되며, 외부로의 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밀폐화시설을 설치하여 유해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겠음</li> <li>○ 순환골재 생산은 건식으로 이루어 지고, 세척으로 인한 침전물은 별도로 업체를 통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폐수 발생은 전혀 없으며, 침전된 오염물은 다시 재순환하여 세척함</li> <li>○ 또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하천에 노출될 경우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흡착포, 유고형화제 등의 장비를 항시 비치하겠음</li> <li>○ 공사중 홍수 및 토사유출량 증가에 따른 저감시설로 임시침사지를 계획 하였으나, 향후 개발사업 단계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하겠음</li> <li>○ 구체적인 우수계획 및 공사계획 등이 확정되는 세부 실시계획시 검단일반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li> <li>○ 본 검토에서는 합리식으로 홍수유출 량을 산정하였으며, 차후 설계단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시에는 정확한 우수배계계획과 함께 홍수유출량을 재산정하겠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협의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p>재난 관리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조성에 따른 소규모 절.성토사면 발생은 불가피하므로 안전성을 확보한 사업시행이 필요함. 향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토질조사를 통한 사면에 대한 안정해석을 통하여 본 계획지역에 부합하는 적정단면의 결정이 필요함</li> <li>○ 주요시설물이 설치되는 지점에 대하여 세밀한 지반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토공작업이 완료된 후 지반조사를 재실시 지반침하에 대한 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li> <li>○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 변화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 유지요함</li> <li>○ 공사시 깎기사면은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면전체에 토사유출방지(비닐,가마니)를 설치 운영필요</li> <li>○ 공사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토제거 공사시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강우로 인해 토사유출량을 최소로 하기 위한 유출토사발생 근원적으로 차단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토질조사를 통한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여, 본 사업지구에 부합하는 적정단면을 결정하겠음</li> <li>○ 주요시설물이 설치되는 지점에 대하여 세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토공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반조사를 재실시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재해를 방지하겠음</li> <li>○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 변화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겠음</li> <li>○ 공사시 깎기사면은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면전체에 토사유출방지(비닐, 가마니)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음</li> <li>○ 표토제거 공사시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여,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량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li> </ul>	<p>반영</p>
<p>한강유역 환경청 (사전 환경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의 취급·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폐기물,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li> <li>○ 이 시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녹지조성 및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시설의 밀폐화로 환경상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겠으며, 실내에 집진장치를 설치하여 외부로의 비산먼지 유출을 최소화 하겠음. 또한,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에 투수성 포장을 설치토록 계획함</li> <li>○ 환경친화적인 시설계획을 위해 인접도로에 폭원 15m의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계획하였으며, 내부도로 및 시설물에 인접하여조경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음. 한편, 식재 수목 선정시 고유종을 계획하여 적절히 자생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li> </ul>	<p>반영</p>

협의를부서	협의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p>한강유역 환경청 (사전 환경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설치계획은 검토서에 제시한 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변경이 수반되는 의견은 조치계획에 반영·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 총 120,149㎡ 중 도로(대 3-58호선)와 연결하는 동측 및 남측 경계는 충분한 폭으로 녹지를 조성(폭 15m이상)하고 '완충녹지'로 지정·관리(10,141㎡ 이상, 생태 숲 모델 적용)하여야 함</li> <li>· '완충녹지'부지에는 도로개설 등의 개발행위는 제한</li> </ul> </li> <li>○ 사업부지 내 조경녹지구간은 생태적 배식, 주변식생 및 경관영향을 고려하여 교·관목을 혼합하여 밀집 식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녹지는 사업부지 내 편의시설, 인도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녹화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li> </ul> </li> <li>○ 운영시 발생오수는 검토서에 제시한 대로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주) 장형기업의 공정상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처리 후, 전량 재활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수처리시설 용량, 처리효율, 설치위치 등을 조치계획 제출시 제시</li> </ul> </li> <li>○ 야적장 등 외부로 노출된 시설에는 비가림막, 유출방지턱, 유도로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li> <li>○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주기적 준설 등)을 이행하여야 함</li> <li>○ 중간처리시설, 제조시설, 보관·저장시설 등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공정은 검토서에 제시한 대로 밀폐형(돔, 골조막 구조 등)으로 설계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설치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바로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부득이한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변경규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6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측 및 남측 경계부 계획녹지는 완충녹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식재 계획 수립시 생태숲 모델을 도입할 예정임</li> </ul> </li> <li>○ 조경녹지구간에 대해서는 교·관목을 적절히 혼합하여 밀집 식재하였으며, 내부도로 및 건축물에 인접하여 녹지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휴식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음</li> <li>○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하겠으며, (주)장형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처리 시설(물리·화학적 처리)에서 처리하고 재이용하도록 하겠음</li> <li>○ 야적장의 경우 밀폐화시설로 계획하여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실시계획 수립시 시설별 상세계획을 수립하겠음</li> <li>○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주변 수계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음</li> <li>○ 건축계획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밀폐형으로 계획하였으며, 실시계획 수립시 시설별 상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li> </ul>	<p>반영</p>

협의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p>한강유역 환경청 (사전 환경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에코 등 배출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은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반영결과를 조치계획에 제시하여야 함 (용량, 효율, 설치위치 등 포함)</li> <li>○ 난방시 청정연료(저유황 연료 등)를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li> <li>○ 주차장 등 시설부지는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토양 우수침투가 방해받지 않도록 투수율을 고려한 생태블럭 등 친환경적 포장재료를 선정·사용하여야 함</li> <li>○ 이 협의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 별도로 협의(단, 구적오차로 인한 경미한 사항 또는 녹지 등 환경보전용지 추가 확보는 예외)</li> </ul> </li> <li>○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하여야 함</li> <li>○ 협의내용의 이행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진시설, 흡착시설 등을 계획하였으며, 용량, 위치 등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음</li> <li>○ 인천광역시 연료기준에 적합한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li> <li>○ 사업대상지 내 주차장, 도로 등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계획을 계획하였으나 세부계획은 실시계획시 수립토록 하겠음</li> <li>○ 협의의견에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으며, 반영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규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6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협의토록 하겠음</li> <li>○ 사업시행시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 발생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li> <li>○ 협의내용의 이행 및 인·허가, 승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음</li> </ul>	<p>반영</p>